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35호(2013. 5. 2.) 『강동구 둔촌1동 170-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』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3호(2015. 1. 22.) 『강동구 둔촌1동 170-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(정미한 사항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』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, 강동구 고시 제2023-43호(2023. 3. 15.) 『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』된 명일로(중로 2-102)에 대해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-1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- 2) 사업의 명칭: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(중로 2-102)

다. 사업내용

- 1) 규모 및 내용: (규모) 18,862.0㎡, (내용) 정비기반시설(도로) 확장 공사
- 2) 사업대상

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
중로	2	102	15~23.5	보조간선 도로	4,000 (893)	명일동 중로3-63	둔촌동 광로1-22	일반 도로	()는 정비구역내 해당사항임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사업시행자: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박승환)
- 2) 주소: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, 3층 316호(오스카상가)